

인천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 보행안전 기반의 구축과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행자길에 대한 실태조사 시 포함될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

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고, 평가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라.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6조)

마. 공공시설물등으로 인하여 보행자에게 위험이 예상되거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시설물등을 통합·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구간별로 인천광역시 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정함(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7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 : 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45, 팩스 032-440-8766, 이메일 : adiosever@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시장은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 보행유발 시설 현황
2.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전용길 현황
3. 보행자 입체횡단시설 현황
4. 보행자길의 불법주차 현황
5. 소음, 악취, 분진 등 보행자 피해 유발 요소
6. 보행환경이 뒤떨어진 지역 현황
7. 그 밖에 보행자길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

제4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다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5년마다 인천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문화, 역사적 전통 등 지역적 특성
2.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3. 대중교통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보행자길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할 때에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친환경성에 관한 사항
2. 공동체의 교류증가, 보행활력 증진 등의 사회적 편익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

제6조(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 구성 등) ① 시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물등으로 인하여 보행자에게 위험이 예상되거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시설물등을 통합·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구간별로 인천광역시 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도로, 교통 관련 인천광역시에 소속된 공무원
2. 인천지방경찰청 또는 해당 도로구간을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
3. 해당 도로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시설물등의 관리기관의 직원
4. 해당 도로구간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5. 그 밖에 보행, 교통 및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 의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협의회에서 도로 구간별로 해당 안전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제8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시행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